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영세 농어민"이라 함은 영세농민의 경우 경지면적 0.5ha 미만의 소유농가를 말하며, 영세어민의 경우 소형어선(2톤미만의 어선을 말함)을 이용한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②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장학생의 선발) ①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시장. 군수는 제 3 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2. 도지사는 장학금지급대상자를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중에서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 7 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년 2 회 지급한다.

제 8 조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 9 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②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 10 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1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